

문의 안내 :

문서번호 : 기금관리 -

가산금과 증가산금

납부기한 경과시 부과액의 3% 가산금 부과되며,
 체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1개월
 경과시마다(최대60개월) 증가산금이 1.2%씩
 추가됩니다.

※ 계산식 :
 부과금액+가산금(부과금액의 3%)+증가산금
 (부과금액×1.2%×경과월수)

OCR

독촉장·체납고지서 겸 영수증(고객용)

지로번호

7001293

통지번호					
성명(명칭)					
전용목적					
전용농지					
납부금액	부과금액	가산금	증가산금	합계	납부기한
					까지

가상계좌

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오니 납부기한까지
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

월

일

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(

)의

대행자

한국농어촌공사 사장

안내 말씀

1.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
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인가
등이 취소됩니다.

2. 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
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
아니하면 「농지법」 제38조제11항에
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
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
수 있습니다.

3.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
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
바랍니다.

4.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허
가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
하여 주십시오

금융결제원 승인 제

45848호

독촉장·체납고지서(금융기관용)

OCR

지 로 번 호

7001293

금 액

원

지로번호		고객조회번호	C		금액	C		Code	
------	--	--------	---	--	----	---	--	------	--

통지번호

성명(명칭)

전용농지

전용목적

납부금액

부과금액

가산금

증가산금

합계

납부기한

가상계좌
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
 월
 일

수
납
인